

"힐링과 승강기의 도시, 행복한 거창"



# 거 창 군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

1. 귀 회 및 각 구성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공중의 안전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(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)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
3. 귀 회 소속 건축사님 및 업무관계자분들은 건축주에 대하여 위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건축시공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※ 적용기준 : 2018. 6. 27. 최초 건축허가(신고) 신청시부터 적용

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사항 1부. 끝.

1

## 거 창 군

수신자 거창지역건축사회 회장, 관내 건축사 귀하



주무관	유종영	건축민원담당 주사 김춘곤	도시계획담당 대결 2018. 6. 25. 주사 어윤현	도시건축과 과장	전결
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

협조자

시행 도시건축과-30384 (2018. 6. 25.) 접수

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(거창군청) / <http://www.geochang.go.kr>

전화번호 055-940-3615 팩스번호 055-940-3579 / [promethaus@korea.kr](mailto:promethaus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"국민행복시대!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."

#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

## □ 개정사유

- 공중의 안전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 강화(「건설산업기본법」이 개정)

\* 2018. 6. 27. 최초 건축허가(신고)신청시부터 적용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정사항
연면적 661㎡ 초과 주거용건축물	연면적 200㎡ 초과 건축물
연면적 495㎡ 초과 비주거용건축물	단독주택중(다가구주택, 다중주택)
공동주택	변경없음
체육시설, 공원시설, 관흥진흥법상 유기시설 등	변경없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- 학교, 병원, 다중이용시설 등	변경없음

\*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, 저장고, 작업장, 퇴비사, 축사,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적용 제외

\* 경미한 건설공사 : 종합공사를 시공 업종 5천만원(전문공사 2천만원) 이하

## □ 적용관련 주요사항

- 설계변경에 따라 건축주 시공에서 건설업자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
→ 관계자 변경신고 후 허가사항(변경) 신청(별칙 주의)

\* 일괄변경 사항인 경우는 관계자 변경만 신청

\*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(변경) 신청

## □ 행정사항

- 설계사무실 내방 민원인에게 법령 개정사항 홍보